차이나 CHINA 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京都律师事务所 King & Capital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 목 차 –

■ 투자

1 •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1년판) ····· 2
2 •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1년판) ····· 2

■ RCEP

3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 3
4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따른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방법 ····· 3
5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실시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 5

■ 식품

6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방법 ····· 6
7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 6
8 • 수입 유제품 검험검역 관련 요구 명시에 대한 공고 ····· 8
9 • 수출식품 생산기업 경외등록신청 관리방법 ····· 9

■ 화장품

10 •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실시사항에 대한 공고 ····· 10
11 •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 11
12 • 아동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 12
13 •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 13
14 • 화장품 안전평가기술 가이드라인(2021년판) ····· 13

■ 지적재산권

15 • 상표 일반위법 판단기준 ····· 14

1.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1년판)

- 법령 원제 :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 발표/시행 : 2021년 12월 27일 발개위와 상무부 공동 발표, 2022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drc.gov.cn/xxgk/zcfb/fzggwl/202112/t20211227_1310020.html?code=&state=123

■ 2021년판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는 전년도 33건에서 금년도 31건으로 2건 축소되었음

- 전용차·신에너지 자동차·상용차를 제외한 완성차의 중국산 제품 쿼터제 및 외국인투자기업 1개사 당 중국 내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이하만 설립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던 이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 부문 외상투자 제한이 완화됨

- 방송 TV 설비 산업과 관련, 2020년판 "위성 TV 및 라디오 지상 방송 수신설비 및 핵심부품의 생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외상투자에 대한 제한이 사라짐. 다만, 해당분야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020년판의 규정에 근거, 관련 허가 없이는 위성TV 및 라디오 지상 방송 수신설비의 생산·수입·판매·설치와 사용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거하여 국내투자자 및 외국투자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임

- 투자가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경내 기업이 경외에서 상장할 경우 주관부서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신규로 추가됨

2.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1년판)

- 법령 원제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 발표/시행 : 2021년 12월 27일 발개위와 상무부 공동 발표, 2022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drc.gov.cn/xxgk/zcfb/fzggwl/202112/t20211227_1310019.html?code=&state=123

■ 2021년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는 2020년판의 30건에서 27건으로 3건 축소되었음

- 자유무역구 2021년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국판 네거티브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조

업과 방송 TV 설비 관련 제한조치를 삭제하였음

- 기존 법률은 사회조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였으나, 금년 개정에 따라 중국측의 투자 비율이 67% 이상이면서 법인대표가 중국국적자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선하였음

3.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 법령 원제 : 《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
- 발표/시행 : 2022년 1월 1일(중국 기준) 부터 효력 발생
- 법안 공고 : http://www.mofcom.gov.cn/article/syxwfb/202111/20211103214264.shtml

■ 2021년 11월 2일 중국의 RCEP 담당기구인 ASEAN사무국은 통지를 발표하여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ASEAN 국가와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4개의 비ASEAN 국가가 정식으로 협정발효 기준을 충족하게 됨. 협정에 근거 2022년 1월 1일부터 RCEP는 상기 10개 나라에서 효력이 발생

- RCEP 협정문은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무역구제,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부속서), 통신서비스(부속서), 전문직 서비스(부속서), 자연인의 일시 이동,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정부조달, 일반 규정 및 예외, 분쟁해결 및 최종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따른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방법

- 법령 원제 : 《中华人民共和国海关《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
- 발표/시행 : 2021년 11월 24일, 해관총서 발표 , 2022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015202/index.html

■ 동 원산지관리방법은 총 6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목적·근거법률·적용범위,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 수입화물통관 혜택절차, 수출화물 통관절차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원산지 관리방법은 RCEP 총 15개 체결국가들 중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10개국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1) 원산지 물품

하나의 회원국에서 완전히 획득하거나 생산한 경우, 하나의 회원국에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생산한 경우, 하나의 회원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생산 물품에 대한 특정 원산지 규칙 규정의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또는 기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를 포함함

2)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에는 증명서와 원산지 성명서를 포함함. 원산지 성명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급해야 하며 고유일련번호와 고유성명서번호 및 발급자 성명, 서명, 날짜가 기재되어야 함.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유효함

3) 특혜

- 원산지 자격을 갖춘 수입물품은 그 원산지 국가(지역)에 따라 상응하는 협정하의 세율 적용
- 수입화물 수화인 또는 대리인은 협정하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원산지 증명, 인보이스, 운송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에 물품의 원산지 국가(지역)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른 회원국이 동일한 원산지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협정의 최고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4) 동일한 회차에 수입하는 원산지 물품의 과세가격이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이 협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제출을 면제함

5)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A.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이 물품의 세관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세율적용 신청을 하지 않고 또한 보충신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

B. 화물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C. 원산지 증명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D.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 수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E.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날부터 90일내 수입 화물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 회원국의 발행기관 또는 주관부서로부터 검증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경우, 또는 회신 결과가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성, 물품의 원산지 자격 또는 국가(지역)을 확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F. 수출 회원국 또는 해외 수출자, 생산자로부터 현지 검증 요청한 날로부터 30일내 세관의 회신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현지 검증 요구가 거절된 경우

G. 수입 화물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에게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6) 수출화물 원산지 증명서 발행

– 수출 화물 송화인 및 그 대리인, 이미 원산지 기업 사전등록을 진행한 국내 생산자 및 대리인은 중국 발행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음

7) 발급된 원산지증서의 원본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최초 발급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신청할 수 있음

5.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실시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 법령 원제 : 《海关总署关于《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实施相关事项的公告》
- 발표/시행 : 2021년 12월 15일 발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061635/index.html

■ 동 공고에 의하면 중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2022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는 회원국 간의 상품무역거래에서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 수출화물의 발주인 또는 대리인은 협정에 근거하여 화물 세관 신고 절차를 진행하며, <원산지 전자정보 교환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최혜국대우 협정하의 수입화물>요구에 따라 수출입 통관서류를 작성하고 원산지증빙을 제출함

- 협정 효력 발생 전 기타 회원국에서 출발하였으나 도착 전인 화물은 수입인이 2022년 6월 30일 이전까지 세관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여 협정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협정 효력 발생 전 기타 회원국에서 출발하였으나 도착 전인 화물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30일 이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보충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및 비준을 거쳐 수출상은 원산지 성명을 발급할 수 있음

6.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등록 관리방법

- 법령 원제 :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 발표/시행 : 2021년 4월 12일 해관총서 발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619591/index.html

■ 금번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등록 관리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8년에 발표된 기존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등록 관리방법>은 폐지됨

- 주요 내용

1) 기존에는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등록 실시목록>에 근거 목록에 포함된 기업만 등록 관리를 하였지만 신규 등록 관리방법에 의하면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은 모두 해관총서에 등록을 진행해야 함

2) 육류와 육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을 원료로 활용한 제품,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 원료, 소를 넣은 면류, 식용곡물,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건두(乾豆), 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건과(乾果), 로스팅을 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 식이용 식품(特殊膳食食品), 건강식품 등의 경외생산기업은 소재국의 주관당국에서 해관총서에 추천등록 하도록 함

3)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중국경내에 식품을 수출할 시 식품 내포장과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국 주관당국에서 비준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함

4)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등록 유효기간은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고, 연기 신청은 기존의 등록기한 만료 1년 전부터 등기기한 만료 3~6개월 전으로 변경됨. 연기조건에 부합될 경우 유효기간을 5년 연장받을 수 있음

7.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 법령 원제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 발표/시행 : 2021년 4월 12일 해관총서 발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619657/index.html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기존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수출입 벌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식품 생산업체 준비관리규정>은 통합·폐지됨

•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의 명확화 및 관련기관의 직책 확정
– 동 <안전관리방법>은 수출입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적용되며, 기타 수출입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상품의 생산경영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수출입식품에 대해 "합격평정" 진행
– <안전관리방법>에 의하면 세관은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 상품에 대해 합격 심사를 실시하고, 합격 심사에는 수출입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심사, 국외 생산업체 등록, 수출입업체의 비안 및 합격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3)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품목 범위 확대
– <안전관리방법>에 의하면 해관총서는 수입국가(지역)의 국외 식품생산업체의 등록 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의 등록업체 리스트 제도를 폐지함. 국외식품생산업체 등록 범위를 모든 수입식품 국외 생산업체로 확대하였음

4) 수입식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다양화
– <안전관리방법>에 의하면 세관은 수입국가의 식품기업에 대해 심사 및 평가를 진행하며 전문가를 조직하여 서류심사, 영상 검사, 현장 검사 등의 형식으로, 혹은 서류, 영상, 현장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방식을 조합해 평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5) 중국 내 국외식품 수입업체가 주체가 되어 국외 생산기업의 심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중국 내 식품 수입업체는 식품안전 리스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함

6) 수입식품 라벨링
– 수입식품의 포장 및 라벨링은 반드시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군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판매 용기의 포장에 인쇄되어야 하며,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또한 중국 수입업체, 국외 식품생산업체, 유통상 등이 라벨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7) 수출식품 안전관리
– 식품 수출기업에 대해 안전관리제도를 세분화했으며, 식품 수출 기업에 대해 반드시 소급 적용 가능한 식품안전 위생관리체계, 공급자 평가제도, 원재료 검사 기록제도, 생산 기록 제도, 출하검사 기록 제도, 수출식품 소급제도 및 부적합 식품 아웃제도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함

8. 수입 유제품 검험검역 관련 요구 명시에 대한 공고

• 법령 원제 : 《海关总署关于明确进口乳品检验检疫有关要求的公告》
• 발표/시행 : 2021년 12월 23일 해관총서 발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085209/index.html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방법>이 2022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면서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은 폐지됨. 다만 수입 유제품에 대한 하기 요구는 지속적으로 유효함

• 주요 내용

1) 수입 유제품은 수출 국가 혹은 지역 정부 주관부처가 발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위생증명서에는 수출 국가 혹은 지역 정부 주관부처의 날인과 수임자 서명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되어야 함. 위생증명서의 샘플은 해관총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생유 및 생유제품·파스퇴르 살균유·파스퇴르 살균유로 생산가공한 조제유는 변경된 검역 심사절차에 따라 취급되어야 함

3) 해외 생산기업은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에 대한 중국 식품 안전국가표준과 관련 요건을 숙지하고 표준에 부합해야 함

A. 최초 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서 나열한 항목 검사 보고서를 제출함. 최초 수입이란 해외 생산 기업, 제품 명칭, 배합, 해외 수출기업, 국내 수입기업 등 정보가 완전히 동일한 유제품이 동일 세관으로 처음 수입되는 것을 가리킴

B. 최초 수입이 아닌 유제품은 최초 수입 검사보고서의 사본 및 해관총서에서 요구한 항목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초 수입이 아닌 검사보고 항목은 해관총서가 유제품 위험

모니터링 등 관련 상황에 따라 확정하여 해관총서 사이트에 공개함

C. 검사보고서와 수입 유제품의 생산날짜 또는 루트번호가 일치해야 함

D. 수입유제품의 검사보고 증명사항에 대해 승낙제도를 실시함

4) 수입유제품의 검사보고 기구는 경외 공식 실험실이거나 제3자 검사기구 또는 기업 실험실일 수 있고, 경내 식품검험기구 자격요건을 인정받은 검사기구일 수 있음

9. 수출식품 생산기업 경외등록신청 관리방법

- 법령 원제 : 《出口食品生产企业申请境外注册管理办法》
- 발표/시행 : 2021년 10월 29일 해관총서 발표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안 공고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976149/index.html

■ 중국 국내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경외등록 관리업무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세관총서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경외등록신청 관리방법>을 발표하였음

- 경외 국가(지역)에서 중국에서 해당 국가(지역)으로 식품수출기업에 등록관리를 진행하고 해관총서에 추천요구를 제기할 경우 세관총서는 일괄로 해당 국가(지역)에 추천을 진행함

1) 수출식품생산기업의 경외등록신청에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

A.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절차를 완료함

B. 추적 가능한 식품안전 위생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의 운영을 보장하며, 수출식품 생산·가공·저장 과정이 중국관련 법률법규와 수출식품 생산기업 안전위생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C. 수입국가(지역) 관련 법률규정과 관련 국제조약·협정에 특수한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D. 기업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신용자율·규범경영을 진행하며 신용상황이 세관 신용상실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E. 1년 이내 기업자체 안전위생방면의 문제로 수출국(지역) 주관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험이 없어야 함

2) 수출식품생산기업 경외등록신청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세관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세관은 기업신청에 근거하여 평가심사를 진행하며 조건에 부합될 경우 수출국가 주관부서에 추천함

10.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실시사항에 대한 공고

- 법령 원제 : 《关于贯彻执行《化妆品生产经营监督管理办法》有关事项的公告》
- 발표/시행 : 2021년 11월 26일 국가약품감독국 발표, 2022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1126161950138.html

■ 국가약품감독국은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시행을 앞두고 관련 사항에 대해 예고편성격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였음

1) 화장품 생산허가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에 상세 내역 포함

–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화장품 생산허가 및 허가의 변경·연장은 신규 관리방법에 따라 집행하며, 기존의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계속 유효함. 아동 및 아이(눈가)케어류의 화장품 생산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허가항목에 특별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022년 7월 1일 이전까지 신규 생산허가증으로 갱신해야 함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장품내용물 조제에 종사한 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2) 화장품 생산관리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시행에 상세 내역 포함

– 규정에 따라 매차 생산라인의 샘플을 보관 및 기록해야 함. 경외 수입한 샘플 및 기록은 경내 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관해야 함. 샘플보관은 원래의 포장을 유지해야 하고 수량은 품질검험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함

3) 화장품 경영관리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이후 화장품 전시회 주최자 및 화장품 집중거래 시장에 진입한 관련 산업 경영자는 즉시 동 지침에 의거한 경영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2022년 1월 1일 이전 진입한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당 안을 마련해야 함

–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전시회 주최자는 현(县)급 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전시회 시간·장소 등 기본정보를 보고해야 함

11.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 법령 원제 : 《化妆品生产经营监督管理办法》
- 발표/시행 : 2021년 8월 2일 전국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 2022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gkml.samr.gov.cn/nsjg/fgs/202108/t20210806_333443.html

■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은 중국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최초의 제도로서 총 7개 장 6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화장품 생산허가, 생산관리, 경영관리,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1) 등록인, 비안(备案)인
- 화장품 등록인·비안(备案)인은 화장품 생산 품질관리 시스템을 수립해야 하며, 제품 부작용 검측, 리스크 통제, 제품리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함. 화장품 생산기업 경영자는 법률, 법규, 규정·제도, 강제성을 띠는 국가기준, 기술규범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함

2) 품질안전책임자
- 직책: 법인 및 주요 책임자를 협조하여 품질안전관리와 제품출하를 책임지며 품질관리시스템 구축하여 품질안전 책임을 실시하고 제품배합·생산공정·원자재 공급 등을 심사하며 원자재 및 제품의 출하, 부작용의 감측 및 위탁받은 생산기업의 생산 활동을 감독·관리해야 함
- 자질: 화장품·화학·화공·생물·의학·약학·식품·공공위생 또는 법학 등 관련 전문지식과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법률·법규·규정제도와 강제성을 띠는 국가 기준·기술규범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5년이상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경험을 보유해야 함

3) 생산허가
- 새로운 배합으로 화장품 내용물을 조제하는 기업은 반드시 생산허가증을 취급해야 하고, 기존 화장품 내용물 조제에 종사한 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한 만료 90~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진행해야 함
- 아동 및 아이(눈가)케어 류의 화장품 생산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허가항목에 특별히 표시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2022년 7월 1일 이전까지 신규 생산허가증 갱신을 진행하여야 함

4) 생산관리
- 화장품 생산품질 관리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품질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유효한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공급상 선별, 원자재 검험·검수, 생산과정 및 품질 통제, 설비 관리, 제품검험과 샘플관리 등 제도를 수립해야 함

- 위탁생산의 경우 허가증이 있는 기업에 위탁생산을 진행하고 생산과정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품질안전을 책임져야 함
- 출하 후에는 검험합격 후에야 런칭 판매를 진행할 수 있음
- 규정에 따라 매차 생산라인의 샘플을 보관 및 기록해야 함. 경외 수입한 샘플 및 그에 대한 기록은 경내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해야 함. 샘플보관은 원래의 포장을 유지해야 하고 수량은 품질검험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보관의 의무가 있음
- 원자재 및 내포장지 입고 조사기록 제도, 제품판매 기록제도를 실사하며, 기록은 신실성실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 진실되고 완정하며 소급 가능해야 함
- 매년 생산품질 관리규범의 집행 상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제품의 품질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성(省)급 관리부서에 보고하며 당해 문제의 해결 후 생산 재개가 가능함. 생산 정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전면적인 자체 조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되어야 생산을 재개할 수 있으며, 생산 재개 후 10일내 성급 주관부서에 이를 보고해야 함

5) 라벨관리
- 최소 판매단위에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의 내용은 등록 또는 비안서류의 샘플과 일치해야 함

6) 아동화장품
- 아동 화장품은 관련 법률·법규·규정제도와 강제성을 띠는 국가 기준·기술규범 및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 등 아동화장품 품질안전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7) 법적 책임
- 화장품 생산 공정에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화장품 생산기업 및 책임자에 시정명령, 벌금 등의 처벌 절차를 진행함

12. 아동 화장품 감독관리규정

- 법령 원제 : 关于发布《儿童化妆品监督管理规定》的公告
- 발표/시행 : 2021년 9월 30일 국가약품감독국 발표, 2022년 1월 1일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1008171226187.html

■ 국가약품감독국은 아동화장품의 생산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아동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아동의 화장품 사용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화장품 감독관리규정>을 제정 발표하였음

- 2022년 5월 1일부터 아동화장품 등록신청 또는 비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규정의 라벨표식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그전에 등록 또는 비안을 진행하였을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에 라벨을 갱신하여 규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

- 규정에 의하면 아동화장품은 포장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아동화장품표식을 표시해야 하고, "주의" 또는 "경고"를 제시어로 "반드시 성인의 보호 하에 사용"이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함

- 또한 아동화장품 라벨에는 "식품", "식용가능"의 단어 또는 식품 관련 도안을 넣어서는 안됨

13.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 법령 원제 : 关于发布实施《化妆品标签管理办法》的公告
- 발표/시행 : 2021년 6월 3일 국가약품감독국 발표,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603171933181.html

■ 국가약품감독국은 화장품 라벨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라벨 사용을 규범화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을 제정 공고하였음

- 공고에 의하면 공고발표일 부터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에 따라 라벨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비안을 진행하는 화장품은 반드시 관리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기존 등록 또는 비안을 진행한 화장품이 <관리방법>에 부합되지 않을 시 화장품 등록인·비안(备案)인은 2023년 5월 1일 이전까지 라벨의 갱신을 완료하여 관리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

14. 화장품 안전평가기술 가이드라인(2021년판)

- 법령 원제 : 关于发布实施《化妆品标签管理办法》的公告
- 발표/시행 : 2021년 4월 8일 국가약품감독국 발표,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09160436155.html

- 부속 지침 :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
- 부속 원제 : 《化妆品分类规则和分类目录》
- 공고 원문 :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09160151122.html

- 부속 지침 : 화장품 기능홍보 평가규범
- 부속 원제 : 《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
- 공고 원문 :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09160321110.html

■ 국가약품감독국은 2021년 4월 8일 3건의 공고를 발표하여 상기 3부 서류를 공개하였음

- 이에 근거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인·비안(备案)인이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보통화장품 등록을 진행할 시 <분류 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번호를 기입해야 하고,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 또는 비안을 마친 화장품에 대해 2022년 5월 1일 이전까지 화장품 등록 비안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제품분류번호를 보충 제공해야 함

15. 상표 일반위법 판단기준

- 법령 원제 : 关于印发《商标一般违法判断标准》的通知
- 발표/시행 : 2021년 12월 13일 국가지적재산권국 발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안 공고 : https://www.cnipa.gov.cn/art/2021/12/16/art_75_172237.html

■ 지적재산권국은 상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통일된 기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표 일반위법 판단기준>을 발표함

- 동 판단기준은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기존 시행되고 있는 상표법률, 2)법규와 규장제도에서 규정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상표로 사용하지 못하는 표식을 상표로 사용한 경우, 4)기업의 경영활동 중 "유명상표"의 표식을 도용한 경우, 5)상표 피허가인이 법에 따라 명칭 및 제품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6)임의로 등록상표 표식·등록인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7)미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칭하여 사용한 경우, 8)집단상표·상표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상표인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악의적인 상표신청 등 각종 상표관리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정하였음